

# 노인인권의식 척도 타당도 연구

홍 송 이 \* 심 혜 인

## 요 약

이 연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된 「노인인권실태조사」 연구에서 사용한 노인인권의식 척도의 타당도를 검사함으로써, 이 척도가 노인복지서비스 내 노인인권의식에 대한 차별적 진단 도구로써 사용가능한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주간·야간 재가서비스, 2018년 노인여가복지서비스(노인복지관 및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2019년 방문요양·목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 시설장, 시설직원 및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차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개년 동안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학대받지 않을 권리, 권리옹호' 총 5개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조사한 19개 문항을 분석하였다. 결측치를 제외한 연구참여자, 21,469명을 대상으로 SPSS와 Mplus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확인적요인분석 모델 적합도 뿐만 아니라 집중타당도 및 판별타당도도 적합한 수준으로 검증되었으며, Amo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권리옹호 5개 영역으로 구성된 총 19개 노인인권척도가 취약한 노인을 포함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 내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사정도구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대규모 분석대상을 포괄함으로써 보다 보편적인 타당성이 담보되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음을 검증한 것으로, 노인인권침해에 대한 제도적 현장 기제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진단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인권, 노인인권의식, 학대받지 않을 권리, 척도 타당성, 확인적 요인분석

##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n the Awareness of Human Rights for Older Persons

Hong, Song-Iee \* Sim, Hye-In

### ABSTRACT

We aimed to examine whether the human right scale for older person could be used as a screening tool for the diagnosis of awareness on human rights among social welfare agency staffs and their service users. The human right scale consists of five domains with total 19 items: freedom, equality, social rights, rights not to be abused, and rights for advocacy. From 2017 to 2019, the data was collected from different social welfare agencies and then a total 21,469 data were analyzed except missingnes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via Mplus statistical program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andardized return coefficient was above the reference value as suitable, and the concentration

feasibility was secured through the average variance extraction value. The whole results confirmed the verification level of measurement scale. These results suggest more active utilization of the human right scale for elder protection to develop effective interventions against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Key words : Human Rights, Elder Human Rights, Rights Not to Be Abused, Validation of Measuremen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논문접수일(2021년 0월 0일), 논문심사일(2021년 0월 0일), 게재확정일(2021년 0월 0일) \* 교수 / 동국대학교(서울) 사회복지학과(제1저자)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3081040)

\*\* 교수 /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교신저자)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9S1A5C2A03081040)

\* Professor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Dongguk University(Seoul)(First Author)

\*\* Professor /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at Youngsan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

## 1. 서 론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이연순, 우국희, 2013). 통계청 자료(2020)에 의하면,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5.7%이며,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고령사회(aging society)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0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22.8%이며, 2047년에는 전체 가구의 약 절반(49.6%)이 고령자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sup>1)</sup>

그러나 급속한 인구학적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제도적 지원은 노인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아직 미성숙한 연금제도는 노인들을 경제적으로 취약하게 만들며, 의료비 증가, 요양 및 돌봄 문제, 세대 갈등과 사회적 고립 등 미처 고령화를 준비하지 못한 사회 문제로 노인의 사회적 위상과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다.

노인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층과 다름없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주체이다(임우석,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노화로 인해 인간으로써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고, 심지어는 차별과 학대, 편견과 혐오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헌법상의 기본권 규

정과 별도로 개별적 인권법들이 계속해서 제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장이 취약한 수준이다(안진, 2007).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권 전체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인권보장보다는 노인차별, 학대 등과 같은 일반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로부터의 보호라는 점에서 소극적인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이다(윤지용, 2012). 우리사회 역시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 수준이 낮은 편이고,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인권 보호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한 것도 최근이라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임춘식, 윤지용, 2012). 더욱이 현재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다면, 적극적인 노인인권보장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당연하다(임우석, 2015).

노인 인권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고, 일반 시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나 종사자 등 타인의 관점에서 본 노인인권의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개발된 인권의식과 관련한 척도도 대부분 노인 학대와 인권침해 관련 척도를 중심으로 측정되어 왔다(김사라, 김라경, 2018; 임춘식, 윤지용, 2012; 김기수, 2013). 무엇보다도 노인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나 현장에서의 미시적 개입을 위해서는 용이하게 인권의식을 진단할 수 있는 과학적 도구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대규모 연구대상을 활용한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된 노인 인권의식 척도의 실증적인 타당성을 검증하여 노인복지 영역 내에서 상용할 수 있는 인권의식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학대받지 않을 권리,

1) 통계청(2020). 2020년 고령자통계.

권리옹호와 같은 다차원적인 인권 개념을 아우르는 사정도구를 마련하여 기초적인 인권의식 진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진단하고자 하는 자료는 권금주·임연옥(2017)의 연구에서 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인권인식 척도이기는 하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권 영역에서 확장하여 확대받지 않을 권리 영역을 분류하여 조사를 세분화하였다. 또한 실증적인 척도 타당성이 통계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홍송이 외(2019)의 연구에서 척도를 수정함에 있어서 노인의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확대를 고려하여 사회권 영역문항을 확대받지 않을 권리 영역으로 수정하였기에 척도의 적합성을 추후에 논의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인권인식 척도는 인권 의식 향상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및 실천 개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 2. 이론적 배경

### 2.1 인권의식의 개념

인권의 사전적인 의미는 개인이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세계 인권선언에서는 인권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인간이 존엄한 존재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명시한다(홍지우, 2016) 즉,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천부적인 권리를 갖는 존엄한 존재로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노인의 인권 역시 일반적인 인권 개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김미혜, 류주연, 김수진, 2016).

이외에도 많은 인권에 대한 정의들이 언급되는데 그 이유는 인권의식(consciousness of human rights)에 대한 정의가 매우 복잡하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이다(홍지우, 2016). 즉 인권 연구에서 기초적이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인권을 어떻게 정의하고 개념화할 것인가이다.

실증적으로 노인의 인권인식 구성요소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권중돈, 손의성(2010)의 연구

에서는 인간의 존엄권, 자유권, 사회권, 법 절차적 권리로 4가지로 구분하였다. 노인 인권은 일반적으로 기본권, 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등 기본권에 포함된 모든 권리를 포함하지만, 노인의 특성과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화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권중돈, 2008).

박상준·임태승(2010)은 인권 의식의 구성요소를 3요소로 제시하면서, 인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며, 이에 기초하여 인권문제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판단하는 능력을 규정하고 이를 인권판단력이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인권판단력을 통해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을 선택했다면 그 판단에 따라 인권친화적인 행위를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권은 인간이기에 갖는 기본적인 권리며,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는 연령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인권의 개념은 인권의 개념과 상이하지 않다. 다른 연령층과 동일하게 노인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김미혜 외, 2016). 다만, 노인인권인식은 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장받아야 할 인권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2.2 노인인권인식 척도

노인에게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노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사회 서비스의 전환 강조됨에 따라 인권중심(person-centered care)의 복지 영역 내 노인의 인권, 차별 및 확대에 대한 연구가 증대되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한 노인인권실태조사에서는 노인복지 이용시설 내에서의 인권, 확대, 차별의 개념을 반영해 노인(중합)복지관 및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의 노인 인권영역을 6가지(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확대받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권리옹호)로 구성하였다(홍송이, 2018). 이 중 확대받지 않을 권리 영역에서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영역의 질문과는 중복되지 않도록 각 영역에서 포함되지 않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기존 2017년 노인인권실태조사(권금주·임연옥, 2017) 연구도 비교적 유사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인권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자유권은 신체적, 정신적, 사생활, 경제적인 자유권을 의미하며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 종교 및 정치 활동의 자유, 자기 결정권, 사생활 보호 비밀 보장 등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등권은 서비스 제공시 사회적 지위나 경제수준, 개인의 특정 성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권은 노인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줌으로써 방임 당하지 않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정서적으로 지원받을 권리 등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대받지 않을 권리는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에 근거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과 관련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에 대한 사회 차별 실태조사: 개인적 및 제도적 차별 경험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인차별(연령차별)을 참고해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영역 질문과 중복되지 않도록 각 영역에서 포함되지 않은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권리옹호는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요구나 불만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권금주, 임연옥, 2017).

노인인권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부분 노인인권의 실태, 의식, 학대와 차별 등을 중심으로 개별 항목을 분리해서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총체적인 인권 의식 척도를 활용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에야 비로소 노인인권척도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8년 김사라와 김라경은 노인인권척도 개발을 위해 문헌 연구 및 기존의 노인인권척도와 UN의 노인을 위한 5대원칙(자아실현, 존엄, 독립, 보호, 참여)에 대한 주요 개념을 참고해 총 33개 문항으로 노인인권척도를 구성하였고, 지역사회 노인 약 500명을 대상으로, 5개 노인인권척도의 하위요인에 대한 내적 일치도, 반분신뢰도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김미혜 외(2016)의 연구에서는 성인직장인을 대상으로 노인인권의식과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노인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노인학대 인식 문항으로 신체적학대, 언어·정서적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 유기로 세분화하였고, 노

인인권의식은 노인인권의 4개 영역(인간존엄성, 자유권, 사회권, 법 절차적 권리)과 이에 따른 16개를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인권의식은 중년층에서 노인학대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노인의 신체적 이미지는 중년층이면서 동거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노인학대 인식에 부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인인권의식 척도를 노인과 기타 세대를 포괄한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여 척도에 대한 포괄적 타당성보다는 대상별로 개별화 된 검증이 이루어져왔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 영역 내 공적 영역이 수행한 전국노인인권실태 조사 대상에 집중하여 노인인권의식 척도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인권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인권 개념을 다루는데 있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한 2차 자료를 중심으로 노인인권의식 척도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노인인권 의식에 대하여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권리옹호(청원권)과 같은 헌법의 기본권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4가지 유형과 더불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의 인권 보호에서 특히,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대받지 않을 권리 영역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2017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각 연도별 집단에 따라 인권영역 구성을 달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2018년에는 차별받지 않을권리 영역을 조사하였으나, 조사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문항으로 2017년과 2019년에는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기에 최종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노인인권의식 영역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실증적 검증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노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전 영역에 인권중심케어(person-centered care)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 분석 자료

이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주관한 세번의 전국조사인 「노인인권 실태조사」 중 노인인권의식에 관한 이차데이터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노인인권의식 척도의 응답대상자는 2017년 주간·야간 개가서비스, 2018년 노인여가복지서비스(노인복지관 및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2019년 방문요양·목욕서비스를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과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시설직원 종사자, 총 23,921명을 포함했다. 이 중 노인인권의식 척도 문항의 결측치를 제외한 총 21,469명이 최종 분석 모델에 포함되었다.

#### 3.2 자료 분석 방법

노인인권의식 척도자료를 SPSS25.0ver을 활용하여 분포수준과 노인인권의식 하위요인별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노인인권의식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Mplus 7.0ver의 통계프로그램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여 척도의 적합도를 파악하고, 결과값을 중심으로 집중타당도와 편별타당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도별 집단특성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차이를 고려하여 Amos 22.0ver을 활용하여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Multiple Group CFA: MG CFA)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 3.3 변수설명

노인인권의식 척도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학대

<표 1> 노인인권의식 척도 요인별 세부문항

노인인권 하위요인	세부분항
자유권	인권 1 시설 등록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인권 2 서비스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이나 운영 규정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인권 3 시설 또는 직원이 이용자에게 관한 정보나 기록을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한다.
	인권 4 이용자가 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없거나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할 때에도 프로그램 일정을 따르게 하거나 시설직원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sup>2)</sup>
	인권 5 시설 또는 직원이 이용자가 믿는 종교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이용자의 종교와 상관없는 특정 종교 활동(예배, 예불)을 강요한다.
	인권 6 시설 또는 직원이 이용자의 선거 참여 여부에 관여하거나 특정 인물의 선출에 관여한다.
평등권	인권 7 시설 또는 직원이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다
	인권 8 시설 또는 직원이 이용자의 종교, 성별, 경제적 수준, 사회적 지위, 교육수준 등의 이유로 차별한다.
	인권 9 시설 또는 직원이 이용자의 생활습관이나 행동, 성격 등의 이유로 차별한다.
사회권	인권 10 시설 또는 직원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거나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인권 11 이용자의 상태나 욕구, 특정질환(우울증, 치매 등)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
	인권 12 시설 또는 직원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제때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
	인권 13 시설 또는 직원이 이용자를 밀치거나 때리는 등 폭행을 한다.
학대받지 않을 권리	인권 14 시설 또는 직원이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
	인권 15 시설 또는 직원이 이용자에게 부당한 경비를 청구한다.
	인권 16 시설 또는 직원이 이용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인권 17 시설 또는 직원이 이용자의 의견을 무시하며, 무관심으로 대하거나 냉대한다.
권리 옹호	인권 18 이용자 및 가족의 요구사항, 불만 등을 시설 또는 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콜센터, 상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인권 19 이용자나 가족의 요구사항/불만에 대해서 시설 또는 직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받지 않을 권리, 권리옹호로 하위요인이 구성되어 있다<아래 표 1 참조>. 2017년부터 3개년 동안 노인인권의식 척도의 세부 문항은 응답 대상 주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측정된 문항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2017년과 2018년에 사회권 영역의 세부 문항이었던 “이용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시설직원이 이용자와 대화하는 것을 꺼리거나 이용자의 의견을 묵시하며 무관심으로 냉대한다”의 문항을 학대받지 않을 권리의 영역으로 일관성 있게 조정하였다. 2019년 조사문항 기준으로 자유권 7문항, 평등권 2문항, 사회권 3문항, 학대받지 않을 권리 5문항, 권리옹호 2문항 총 19문항을 연구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통적으로 구성된 「노인인권실태조사」의 노인인권의식 척도에서 총 19개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인권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유권 7문항, 평등권 2문항, 사회권 3문항, 학대받지 않을 권리 5문항, 권리옹호 2문항이며 각 문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느 정도의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권침해의 정도를 “1=전혀 아님”, “2=약함”, “3=심함”으로 측정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0=전혀 아님”, “1=약함”, “2=심함”으로 재코딩하 변환한 변수를 인권의식의 값으로 활용하였다. 각 인권 영역별 하위요인의 세부문항은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 4. 연구결과

각 하위문항에 따라 요인별 신뢰도 분석 결과 자유권 Chronbach  $\alpha=.888$ , 평등권 Chronbach  $\alpha=.901$ , 사

회권 Chronbach  $\alpha=.862$ , 학대받지 않을 권리 Chronbach  $\alpha=.962$ , 권리 옹호 Chronbach  $\alpha=.873$ 로 나타나 변수활용에 적합한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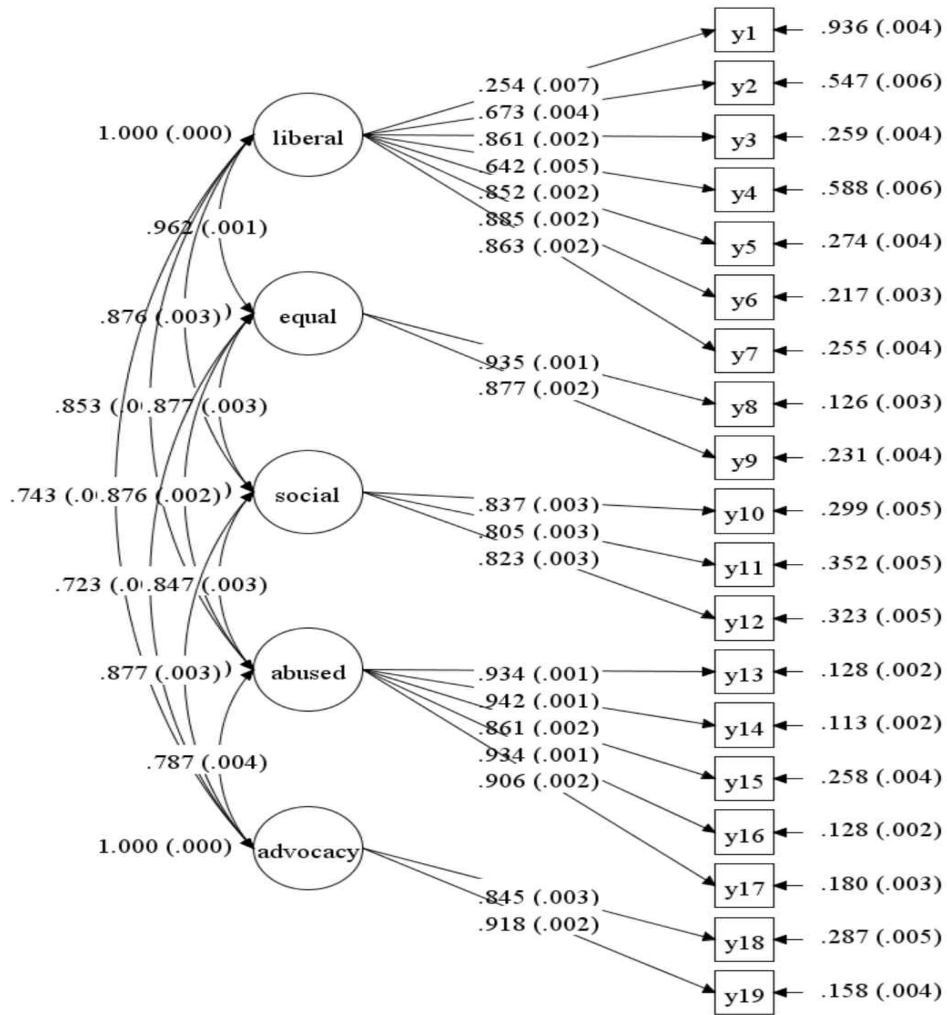
Mplus를 이용한 확인적요인분석을 통하여 노인인권의식 척도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chi^2=16298.625$  (df=142,  $p<.001$ ), RMSEA =.081, CFI=.952로 나타나 모델은 적합한 수준을 보였다. 노인인권의식 측정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가 수용 가능하여 각 개념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 4.1 노인인권의식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평가

노인인권의식 척도의 잠재변수인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학대받지 않을 권리, 권리옹호 5개의 단일차원성, 신뢰도 및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우선 노인인권의식 척도의 신뢰도(Reliability) 분석을 하고자 평균분산 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노인인권의식척도의 잠재변수에 대해 지표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가 0.5이상의 AVE 값을 보이며 신뢰도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를 통해 지표의 내적일관성을 측정한 결과, 수용 가능한 신뢰수준 CR 값인 0.70 이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노인인권의식 척도의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검토를 통하여 개념타당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우선 집중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노인인권의식 척도의 표준화요인적재량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상적 수준인 0.7 이상의 값을 나타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AVE 값이 모두 0.5 이상이었으며, CR값은 0.7 이상으로 나타나 노인인권의식 척도의 집중타당도가 증명되었다(<표 2>).

2) 2017년(주간·야간계가시설)과 2018년(노인여가시설·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는 “이용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할 때에도 프로그램 일정표를 따르도록 한다.”로 설문문항을 사용하였으며, 2019년(방문요양·방문목욕)에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에게 먼저 의견을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로 설문문항을 사용하였으나 공통적으로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시설 또는 직원의 임의로 인하여 이용자의 자유권에 제한을 받게 될 경우를 기술하였기에 이 연구의 세부문항 제시할 때에는 이를 공통적인 문항으로 볼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그림 1> 노인인권의식 척도의 확인적요인분석

<표 2> 노인인권의식 척도의 신뢰도 분석

개념	AVE	$\sqrt{AVE}$	CR
자유권	0.552	0.743	0.880
평등권	0.822	0.906	0.902
사회권	0.640	0.800	0.876
학대받지 않을권리	0.839	0.916	0.963
권리옹호	0.778	0.882	0.875

주: AVE >.50 신뢰도가 있음, CR >.70, 수용 가능한 신뢰도

<표 3> 노인인권의식 척도의 타당도 분석

개념	개념 간 상관제공( $\phi^2$ )				
	A	B	C	D	E
A 자유권	<b>0.552</b>				
B 평등권	0.925	<b>0.821</b>			
C 사회권	0.767	0.769	<b>0.820</b>		
D 학대받지 않을권리	0.728	0.767	0.847	<b>0.839</b>	
E 권리옹호	0.552	0.523	0.877	0.619	<b>0.778</b>

주: 개념간 상관제공( $\phi^2$ )의 대각선은 AVE값임.  
개념간 상관 및  $\sqrt{AVE}$ 의 대각선은  $\sqrt{AVE}$  값임

<표 4> 신뢰구간 기준 판별타당도

개념 간 관계	Corr.	S.E.	(Coor.+2)*S.E.	(Coor.-2)*S.E.
자유권↔평등권	0.962	0.001	0.003	-0.001
자유권↔사회권	0.876	0.003	0.009	-0.003
자유권↔학대받지 않을 권리	0.853	0.003	0.009	-0.003
자유권↔권리옹호	0.743	0.004	0.011	-0.005
평등권↔사회권	0.877	0.003	0.009	-0.003
평등권↔학대받지 않을 권리	0.876	0.002	0.006	-0.002
평등권↔권리옹호	0.723	0.005	0.014	-0.006
사회권↔학대받지 않을 권리	0.847	0.003	0.009	-0.003
사회권↔권리옹호	0.877	0.003	0.009	-0.003
학대받지 않을 권리↔권리옹호	0.787	0.004	0.011	-0.005

<표 5> MG CFA의 측정동일성 검정 결과

측정동일성 검정	모형적합도					$x^2$ 차이검정		
	$x^2$	df	p	CFI	RMSEA	$\Delta x^2$	df	p
형태동일성 비제약모델[model 1]	24369.834	426	>.001	.969	.037			
요인부하량 동일성 $\lambda$ 제약[model 2]	25528.092	454	>.001	.967	.037	1158.529	28	>.001
공분산 동일성 $\phi$ 제약[model 3]	39285.554	456	>.001	.949	.046	14915.720	30	>.001
요인부하량, 공분산동일성 $\lambda, \phi$ 제약[model 4]	45928.016	522	>.001	.941	.046	21558.182	96	>.001
요인부하량, 공분산, 고차분산 동일성 $\lambda, \phi, \theta$ 제약[model5]	71099.770	560	>.001	.908	.056	46729.937	134	>.001

RMSEA >.05 좋은 적합도, <.08 괜찮은 적합도, <.10 보통적합도, >.10 나쁜 적합도, CFI >.90: 좋은 적합도



판별타당도는 개념별 AVE값이 개념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 $\phi^2$ )을 상회하는지를 검토했을 때,  $AVE > \phi^2$ 이면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 3>의 결과를 살펴보면 개념들 간 상관제곱 값이 가장 높은 0.925보다 낮은 AVE값을 볼 수 있어 판별타당도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VE값과 개념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통한 척도의 타당도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14]에서 활용하고 있는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한 척도의 판별타당도 검증을 수행하였다.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한 판별타당도 검증은 상관계수에 2를 더하거나 빼 값에 표준오차를 곱하였을 때의 결과값이 1이 아닌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개념 간 상관관계 값을 계산하였을 때 1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AVE 값에 의한 판별타당도 평가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2차 자료는 노인, 종사자(시설장, 시설직원 및 요양보호사)로 그 집단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연도별 2017년에는 주·야간보호 재가서비스, 2018년 여가 복지서비스, 2019년 방문요양·목욕 재가서비스로 서비스 특성별 집단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연도별 집단을 분리하여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Multiple Group CFA)을 실시하여 집단간 교차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Myers et al.,(2002)과 Mullen(1995)의 측정동일성분석 5단계를 분석을 통해 측정동일성(measurement equivalence)결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집단 간 어떠한 제약을 하지 않은 비제약모델인 형태동일성모형의 적합도는  $\chi^2(426)=24369.834$ ,  $p<.001$ , CFI=.969, RMSEA =.037로 나타났다. CFI와 RMSEA에서는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따라서 노인인권의식에 척도 대한 형태동일성이 만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두 번째로 집단 간 요인부하량을 동일하게 제약한 model2인 요인부하량 동일성에 대한 검정을 시행한 결과,  $\chi^2(454)=25528.092$ ,  $p<.001$ , CFI=.967, RMSEA=0.037로 그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형태동일성

모형과 비교하면  $\Delta\chi^2(28)=1158.529$ ,  $p<.001$ 로 나타나  $\chi^2$  차이검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CFI값의 차이가 .02를 넘지 않고, RMSEA는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 적합도 지수의 결과를 통해 요인계수 동일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세 번째로 집단 간 공분산 및 잠재변수의 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model 3, 공분산 동일성 검정 결과는  $\chi^2(456)=39285.554$ ,  $p<.001$ , CFI=.949, RMSEA=.046의 적합도를 보였다. 요인부하량 동일성 모형과 공분산 동일성 모형의 비교를 통해  $\Delta\chi^2(30)=14915.720$ ,  $p<.001$ 로 나타나  $\chi^2$  차이검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CFI값과 RMSEA값의 차이를 통해 공분산 동일성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요인부하량, 공분산 동일성 검정과 요인부하량, 공분산, 오차분산 동일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앞서 3단계와 마찬가지로 형태동일성과 요인부하량 동일성이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둘의 차이가 유의미하여 요인적제 동일성이 지지된 것을 확인하였다.

## 5. 결 론

이 연구는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권리옹호 5개 인권영역에 대하여 취약한 노인을 포함한 노인복지 서비스 영역의 종사자들이 어떻게 인권침해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사정하는 다차원적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노인인권의식척도의 다차원적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확인적요인분석 결과 값을 바탕으로 평균분산추출 값과 개념신뢰도 값을 활용하여 노인인권의식 척도의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추가적으로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의 차이를 검증하고, MG CFA 측정동일성평가를 통해 형태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인권의식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권리, 권리옹호 5개의 인권영역의 요인별 모형적합도 지수는 기준치를 충족하여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회귀계수도 기준값을 상회하였으며, 잠재변수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평균분산추출값과 개념신뢰도 값으로 집중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잠재변수를 확인한 결과에도 적합한 수준으로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또한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간의 차이와 MG CFA 검증을 통해 척도의 형태동일성을 검증하였으며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타당성이 검증된 노인인권의식척도를 활용하여 노인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노인인권의식을 사정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영역에 노인인권의식척도의 사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에 효과적인 개입을 평가할 수 있는 사정도구로서의 기능을 권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법제화 된 노인인권 교육 진행시 노인인권의식 척도를 교육 전후에 측정하여 노인인권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노인인권교육이 필요한 특히 취약한 노인들이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노인 이용자와 종사자의 인권의식수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교도소 내 노인 수용자와 교도관들의 인권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도 그 기능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노인인권의식을 보다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입함으로써 노인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될 것이다.

현재 헌법에 명시되고 있는 기본권의 내용은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안전권, 문화권, 주거권, 환경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 인권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인권의식에서 분류하고 있는 인권영역 및 조작적 측정은 시대에 조응하는 시의성을 반영해야 한다. 앞으로 확장된 인권영역의 분류 및 문항의 구성에 객관적인 근거가 보다 명확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평가된 노인인권의식 척도의 타당성을 기반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인권의식 척도를 활용하여 노인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노인인권의식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태도, 학대나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노인들의 태도 등을 실증적으로 밝혀 노인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권금주·이서영·박태정. (2016). 노인요양병원의 노인학대 실태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1), 553-560.
- [2] 권금주·임연옥. (2017). 2017 노인인권실태조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3] 권중돈. (2008). 자원봉사의 이해와 실천.
- [4] 권중돈·손의성. (2010). 노인의 자기인식과 차별경험이 노인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49, 81-105.
- [5] 김기수. (2012). 노인의 인권의식이 사회참여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옴부즈맨 집단과 여가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6] 김미혜·류주연·김수진. (2016). 성인의 노인인권의식과 노인이미지가 노인학대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령층과 노인동거경험의 조절효과. 노인복지연구, 71(4), 449-476.
- [7] 김사라·김라경. (2018).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 773-783
- [8] 박상준·임태승. (2010). 초등학생의 인권의식 발달에 관한 연구-인권판단력의 발달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3(2), 39-58.
- [9] 안진. (2007). 노인인권의 발달과 현황에 관한 소고. 인권법평론, 1, 109-134.
- [10] 윤지용. (2012). 노인과 부양자가 지각한 인권의식과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1] 이연순·우국희. (2013). 요양보호사가 경험한 노인학대와 노인인권 인식 연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3(1), 85-103.
- [12] 임우석. (2015). 노인이 지각한 인권의식과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21 세기사회복지연구, 12, 5-34.
- [13] 임춘식·윤지용. (2012). 노인의 노인인권개념 인

- 식과 침해 경험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56, 275-298.
- [14] 홍송이. (2018). 2018 노인인권실태조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15] 홍송이, 박서영. (2019). 2019 노인인권실태조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16] 홍지우. (2016). 충남 아산 노인의 인권의식과 사회활동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Mullen, M. R. (1995). Diagnosing measurement equivalence in cross-national research.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6(3), 573-596.
- [17] Myers, M. B., Calantone, R. J., Page Jr, T. J., & Taylor, C. R. (2000). Academic insights: An application of multiple-group causal models in assessing cross-cultural measurement equival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8(4), 108-121.

————— [ 저 자 소 개 ] —————

홍 송 이 (Song-lee, Hong)

1999년 2월 학사

2001년 2월 석사

2008년 6월 박사

email : [songiee25@dongguk.edu](mailto:songiee25@dongguk.edu)

연구분야

Hong, S-I et. (2020) Activity patterns associatione d with health status in later life. *Journal of Applie d Gerontology*. 39(3) 311-322

Hong, S-I et. (2020) Falls among Asians living in small apartment designed for older adults in Singa pore.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34(1) 31-47

심혜인, & 홍송이. (2020).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노인인권 인식에 관한 탐색적 고찰. *시큐리티연구*, 215-246.

주요경력

2008-2016.2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교수

2016-현재. 한국노년학회 이사.

2016-현재. 한국노인복지학회 이사.

심 혜 인 (Hye-In, Sim)

2011년 8월 학사

2013년 8월 석사

2021년 2월 박사

email : [crimesim@ysu.ac.kr](mailto:crimesim@ysu.ac.kr)

연구분야

심혜인, & 박찬혁. (2020). 경찰공무원의 팬데믹 인식에 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185-212.

심혜인, 김동현, & 박대경. (2020).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우울,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부모 방임수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범죄학*, 14(1), 101-121.

주요경력

2021-현재. 한국교정학회 이사

2021-현재. 사)안전문화포럼 이사